

◆ D-37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임금총액산정방법상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는가?

1. 임금총액산정방법상의 차이

구분	산재보험법	고용보험법
본사	㉠ 본사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: (통상손익계산서상의, 제수당, 복리후생비중식대, 당직수당, 연구비·개발비중 인건비등이 포함됨)	㉡ 본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용근로자: 따라서 ㉠+공무원가명세서상의 급료, 제수당이 포함됨
현장 (2000.1.1.)	2000사금액 +(외주비 X 38%)	총공사금액 +(외주비 X 38%)
현장 (1996.1.1 ~2000.12. 31)	총공사금액 -(제조설치공사, 설계감리비,임차장비비,용지비) X 해당년도 노무비율	{ 총공사금액 -(제조설치공사, 설계감리비,임차장비비,용지비) X 해당년도 노무비율 } - ㉡

2. 97. 1. 1~99. 12. 31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방법

(1) 확정보험료의 산정

- 본 사 : 본사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 x 보험요율 = 보험료
- 현 장 : (각 공사현장단위별로 현재직임금 + 직영노임 + 외주공사비중의 인건비 확인액) x 보험요율 = 확정보험료

※현실적으로 외주공사비중 인건비확인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(총공사금액 x노무비율)로 임금총액을 추정하게 됨.

(2) 노무비율 적용시 총공사금액의 범위

- ① 확정정산을 위한 노무비율 적용시 그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당해 보험년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으로 함.

② “총기성공사금액”: 공사매출액 및 분양매출 + 발주자지급자재+ 미완성상가, 아파트+건설가계정 --> 공단지사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함.

③ 보험료가 이중부과될 소지가 있거나 그 특성상 포함시킬 수 없는 비용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함.

0. 건설임차 장비료, 0. 설계,감리등의 용역비 0.설치공사등에 대한 공사비

0. 용지비, 대지비 0.지급이자(?) 0. 모텔하우스운영비(?)

0. 폐기물처리비, 각종 검사비용(?), 0. 연구용역비 (?)

④ 고용보험료의 산정

● 실업급여 : 직영임금 (현재직 및 직영일용) + (하도급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근로자의 임금) x 실업급여 보험요율

●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: (② - ③ x 노무비율) - 본사인건비 x 고용안정사업 및 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

●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 및 노동부예규 291호(고용보험확정보험료 정산업무 규정)에 의거 고용 안정사업 및 능력 개발사업에만 노무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.

(3) 실업급여적용에 있어 일용근로자 범위 문제

① 고용보험법 제8조(적용제외 근로자)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3호: 일용근로자(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)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-->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없음. (98.9.17개정, 98.10.1시행)

---> 따라서 98. 9. 30까지 3개월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 개사업이 전면 적용제외됨

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(피보험자격의 취득·상실신고)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하게된 때에는 각각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는 이를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. (99.7.1개정)